

감 사 위 원 회

경 고

제 목 이사회 규정 위반 등 업무소홀

관 계 기 관 서울에너지공사

내 용

서울에너지공사(●●●●부, 이하 '공사'라 함)는 '17. 6. 5. 서울대공원 태양광사업 발전 계획(이하 '본 사업'이라 함)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16. 12. 21. 공사설립 이후 서울시 주요 정책 사업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사업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2018. 9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추진이 수개월간 지연되었으며, 현재는 사업주체인 ◆◆◆◆◆(주)(SPC, 특수목적법인)의 단일주주인 △△△(주)와의 주주 협약 무산, 과천시와의 인허가문제, 과천시민의 민원 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사업 자체가 재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본 사업의 시공사로 사업 참여한 △△△(주)의 임원(○○○ 전무)이 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사항에 대한 처리 과정상 이사회 규정 준수 미비 등 업무소홀

공사는 서울대공원 태양광 발전사업을 SPC(특수목적법인, ◆◆◆◆◆)를 설립하여 추진하면서, △△△(주) 임원(○○○ 전무)이 공사 비상임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에게 SPC 출자 및 EPC(시공사) 역할을 부여할 경우, 관련법 규정이나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검토 없이 △△△(주)가 SPC 출자 및 EPC(시공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수립(2017.6.5.)하였다.

한편, 공사 정관 제26조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공사의 사업계획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이사회의 승인을 바로 받아야 하나,

공사(●●●●부)는 아무런 사유 없이 본 사업의 최초 사업계획 방침 수립 이후 이사회 승인 전까지 총4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음에도 본 사업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무려 6개월이 지난 제8회 이사회('17.12.21.)에서 2018년 사업계획으로 승인 받았다.

이에 대해 공사 □□□ ●●●●부장은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업무가 바빠진 하였지만 본 사업의 이사회 승인절차가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시인하였다.

본 사업계획의 내부 보고 과정(2017.10월)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자 뒤늦게 공사 자문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아 ①상법 제397조의 2 제1항에 따른 이사회 승인(이사 2/3 이상 찬성)을 거칠 것 ②승인절차 시 미리 이사회에서 이사A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주)의 전무라는 사실을 밝힐 것 ③조례 제18조와 정관 제26조에 따라 해당 이사인 A는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것으로 회신(2017.10월) 받았음에도,

- ▶ 본 사업의 2018년 사업계획 부의안에 대한 이사회 승인(2017.21.21.) 시 부의안에 △△△(주)가 EPC로 본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비상임이사인 ○○○○가 △△△(주) 임원이라는 사실 또한 이사회에 알리지 않았다.

또한 제10회 이사회(2018.3.23.)에 ‘서울대공원 태양광 사업 SPC 출자안’ 승인 시 △△△(주)의 EPC 참여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였고, 의결서에도 ○○○○ 이사의 서명이 기재되니 않았으나,

- ▶ ◆◆◆장은 회의 시작 전에 구두로 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사회 회의록 검토결과, ○○○○ 이사가 △△△(주) 임원(전무)이라는 사실과 본 사업의 SPC 출자안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서울시에서 주관한 본 사업 실시협약안 확인에 대한 업무처리 부적정

서울시 ▲▲▲▲본부(▼▼▼▼과)는 시민펀드 공모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서울시 포함 각 참여사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짓는 ‘서울대공원 태양광 사업 실시협약’을 2018. 8. 16. 체결하고 그 계획을 수립¹⁾하였다.

실질적으로 실시협약안 작성을 주도한 공사(●●●●부)는 실시협약안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시협약안 제32조 5항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수정하여야 한다’고 2018. 8. 14. 공사 내부 법무팀의 의견을 받았으나,

서울시(▼▼▼▼과)에서 진행하는 2018. 8. 16. 7개 당사자가 실시협약서에 서명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의견 없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2018. 8. 27. 공사 내부결재²⁾를 통해 위 조항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실시협약 서명 절차를

1) 서울시 ▲▲▲▲본부 ▼▼▼▼과는 ‘서울대공원 태양광 사업 실시협약 체결 계획’(2018.8.17.) 수립함

2) 서울대공원 태양광발전사업 실시협약 날인의 건(◆◆◆◆-2454, 2018.8.27. 최종결재 : 사장)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공사 내부 감사실 일상감사 결과 실시협약안에 대해 공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던 중 공사 당연직 비상임 이사인 서울시 ❀❀❀❀관에게 이사회 안건을 추진 받고자 하였으나, 공기업 담당관 공사담당자와의 사전 설명 시 당시 공사담당자였던 ❀❀❀ 사무관이 실시협약서 내용 중 제32조 5항(공사 법무팀에서 의견제시한 조항과 동일) 지방공기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하여 ‘행안부 유권 해석 및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결국 공사는 위 문제가 된 조항에 대해 공기업담당관의 의견 제시로 서울시를 포함한 7개 사업 참여자가 서명한 실시협약서에 서명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협약 서명일이 10개월 정도 지난 현재 공사 일정이 지나는 등 제반여건이 변화하여 새롭게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공사(●●●●부)가 내부적으로 법률검토 결과를 무시하고 추진하다가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뿐만 아니라 실시협약 체결을 주도한 서울시의 대외적인 공신력을 실추시킨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공사 이사회 규정, 법률자문 결과 등 제반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관련 공사직원에게 대해 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신분상 조치할 필요가 있고, 또한 공사(●●●●부)는 실시협약서 내용 중 일부 조항이 지방공기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법률검토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실시협약서 서명을 추진하다가 결국 실시협약서 서명을 하지 못해 실시협약을 무산시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실시협약을 체결을 주도한 서울시의 대외적인 공신력을 실추시켰으므로 이를 추진한 관련 공사직원에게 대해 문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다가 발생한 단순한 실수들이고 사업 담당자³⁾가 퇴직한 상황임으로 실무책임자인 ❀❀❀장에 대하여 “경고”조치 하고자 한다.

3) ❀❀❀은 서울에너지공사 직원으로 본 사업의 담당자였으나 '18. 9. 28.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함.

조치할 사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공사 이사회 규정 및 법률자문 결과 등 제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을 지연시키고 서울시의 대외적인 공신력을 실추시킨 아래 관련자에 대해 공사 내부규정에 따라 ‘경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구분	소 속		직급	성명	관리 기간	비위요지	조치 의견
	행위시	현재					
실무 책임자	서울에너지 공사 ●●●●부	좌동	●● (□급)	□□□	16.12.21. ~ 현재까지	【 이사회 규정위반 등 업무소홀 】 - 주요 사업계획 기본방침에 대해 즉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뒤늦게 이사회 승인을 받았으며, 내부 법률 자문 결과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함. - 내부 법률자문 결과를 무시하고 업무를 추진하다 업무추진 무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의 대외적인 공신력을 실추시킴.	경고